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에 따른 종사자 수 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448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 등에 따른 종사자 수 현실화(안 제2조의3 별표 1)

인력확충 등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상담원의 수를 8명 이상에서 14명 이상으로 현실화

나.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9조 별표 3)

외국인·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상담소 추가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긴급전화센터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1명과 **14명 이상**의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는 주요 외국어별로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 보호시설 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외국인보호시설 및 외국인 대상 상담소</u> 만 해당한다.)
긴급전화 센터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구분	자격기준
	• 성폭력 또는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 및 외국인 대상 상담소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 및 장애인 대상 상담소만 해당한다)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별표 5. 제2호의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u>법 제5조제5항</u> , 제7조제4항 또는 <u>제8조의3제4항</u> 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나. <u>법 제5조제5항</u> ,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u>제8조의3제4항</u> 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법 제12조 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2조 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라.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12조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6. 1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특화운영 여부 (☐ 외국인, ☐ 장애인, ☐ 기타)		
	소재지			
	소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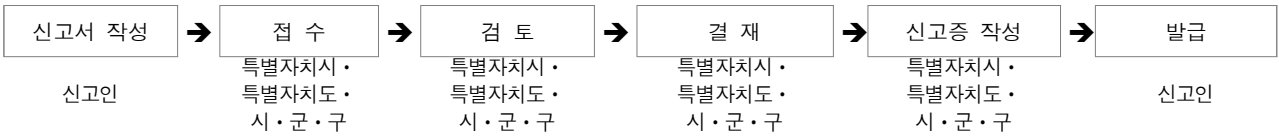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연 락 처	(02) 2100 - 6422